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. 23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월 10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9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월 23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김영미

### 가. 개정이유

-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,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,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출자금 변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#### ○ 감면조항 신설

제13조의2(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)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.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**

- 본 감면조항 신설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마포구 소재 사회적 협동조합 11개 모두 출자금을 변경할 경우에도 약2,386천원으로 미미한 반면, 감면에 따른 혜택은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큰 지원이 될 수 있고,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